

1. 개정이유

담배수입업자 및 도·소매업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이상 휴업하는 등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단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행정집행 도모

2. 주요내용

가. 담배수입업자 및 도매업자가 “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”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* 단축(안 별표2의2 위반사항 마.)

* (기존) 1차: 1개월, 2차: 3개월 → (변경) 1차: 7일, 2차: 1개월

나. 담배소매인이 “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”, “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,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”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* 단축(안 별표3 위반사항 마.,바.)

* (기존) 1차: 1개월, 2차: 2개월 → (변경) 1차: 7일, 2차: 1개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2 제2호마목 영업정지기준의 1회란 중 “1개월”을 “7일”로 한다.

별표 2의2 제2호마목 영업정지기준의 1회란 중 “3개월”을 “1개월”로 한다.

별표 3 제2호마목 영업정지기준의 1회란 중 “1개월”을 “7일”로 한다.

별표 3 제2호마목 영업정지기준의 1회란 중 “2개월”을 “1개월”로 한다.

별표 3 제2호바목 영업정지기준의 1회란 중 “1개월”을 “7일”로 한다.

별표 3 제2호바목 영업정지기준의 1회란 중 “2개월”을 “1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2 제2호마목, 별표3 제2호마목, 별표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

개정안

별표2의2(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) 제2호마목

마.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	법 제15조 제3항 제5호	1개월	3개월
---	----------------	-----	-----

별표3(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) 제2호마,바목

마.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7조 제2항 제5호	1개월	2개월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,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7조 제2항 제6호	1개월	2개월

별표2의2(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) 제2호마목

마.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	법 제15조 제3항 제5호	7일	1개월
---	----------------	----	-----

별표3(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) 제2호마,바목

마.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7조 제2항 제5호	7일	1개월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,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7조 제2항 제6호	7일	1개월